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0775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염병 역학조사 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 제공방식 개선

- Q. 위치정보 제공방식의 요건과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A. 국민의 위치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법을 통한 개정보다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 안내 및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동선 공개 방식 개선

- Q. 관련 부처와 협의 계획

A. 지속적인 중앙방역대책본부-국가인권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반적인 절차 및 정보공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Q. 개선 계획

A. 확진자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확진자 동선 등 정보공개 가이드라인(3판)을 개정하였습니다.

3.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 Q.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파기 계획

A. 메르스를 포함하여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신고 등을 위해 수집된 법정감염병 환자의 인적정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영구 보존입니다.

- Q. '코로나19 상황종료' 기준 및 구체적인 파기 계획

A. 코로나19가 현재 유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 상황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4. 추가 질의

4-1. 기지국 접속이력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수집 건수

- Q. 위치정보 수집 절차 및 위치정보·기지국정보 수집 건수

A. 기지국 접속 정보 파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간대에 확진자 발생 시설 인근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해줄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협조 요청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통신사에 지자체에서 요청한 정보 제출 협조를 요청합니다.(필요시, 경찰청 추가 협조 요청)

· 통신사는 요청 결과를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에 회신합니다.

A. 위치정보 및 기지국정보 수집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에서 기지국 접속이력을 통한 휴대전화번호 수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1건이며(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례 제외) 관련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입니다.

4-3. 개인정보 파기 관련

- Q. 개인정보 파기 시점

A. 코로나19가 현재 유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파기시점'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나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 감염병(코로나19) 방역 목적 상 상황종료 이전 확진자 개인정보 파기는 어렵습니다.

○ 상기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본 부서 소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